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6,868,710	31,406,061
일반회계	824,237,497	24,727,125
특별회계	222,631,213	6,678,936
공기업특별회계	196,269,434	5,888,083
상수도사업	74,422,843	2,232,685
하수도사업	121,846,591	3,655,398
기타특별회계	26,361,779	790,853
주택사업 특별회계	3,356,375	100,691
교통사업 특별회계	15,534,997	466,0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35,051	28,05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19,892	36,59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484,539	74,536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4,799	1,344
대지보상 특별회계	243,748	7,312
기반시설 특별회계	290,371	8,711
수질개선 특별회계	2,252,007	67,5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72,25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